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활력지원과장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을 직무특수성 및 내부인력 활용 필요성 증가 등의 사유로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협의 완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2항 중 “도시활력지원과장, 공항운영과장”을 “공항운영과장”으로,
“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,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”을 “광주국토관리
사무소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2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(생략)	제72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<u>도시활력지원과장</u> , <u>공항운영과장</u> ,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, <u>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</u> , <u>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</u> ,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공항운영과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